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8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1.

발 의 자: 박성중·전주혜·김영식

김기현 · 윤창현 · 윤한홍

김태호 · 하태경 · 홍준표

서일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,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,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.

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,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,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(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금지행위) ① (생 략)	제50조(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
	음)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
	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
	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
	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
	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
	<u>행위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